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사유 축소 및
전역자 지원 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80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 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사유 중 조직 운영에 관한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에 따른 병력 감축 또는 복원(復員)¹⁾ 과정에서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u>	3. <u>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u> ----- -----

1) 전시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의미함.

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

□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신분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법 제44조),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하는 경우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병력 감축에 따른 전역사유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2) 「군인사법」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3) 한편, 해당 조항은 「군인사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규정으로, 실제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군인을 전역시킨 사례는 없음.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병력 조정으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나 전직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우리 군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바, ‘병력을 줄이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직업군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역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군 조직은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이나 전시·사변 이후의 복원 과정 등에서 대규모 병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병과 또는 직무의 폐지와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전역사유를 한정할 경우, 실제 병력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요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쟁 종료 이후 병과 또는 직무의 폐지가 없더라도 대규모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제도 운영이 경직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병력 조정에 따른 전역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이나, 현행법 역시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⁴⁾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운영상의 필요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역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님.

또한 「국가공무원법」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른 원에 의하지 않은 직권면직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⁵⁾하고 있는바, 군인에 대해서만 전역사유를 현행보다 추가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우선 재임용 및 전직지원금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귀책사유 없는 전역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4)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운영 중인 전직지원교육제도와와의 관계, 우선 재임용의 기준 및 지원 대상·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법 개정 시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전역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